의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다시, 대한미국! 세월 국민의 나나				
배포 일시	2022. 7. 12.(화)		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관	책임자	과 장	배석주 (044-201-3835)
	자동차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강규욱 (044-201-3840)
	물류정책관	책임자	과 장	박진홍 (044-201-4016)
	물류산업과	담당자	사무관	이경섭 (044-201-4021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

## 7월말부터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(판스프링) 집중 단속

- 도로낙하 시 치명적인 인명사고 우려… 적발 시 엄중 처벌 -
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최근 고속도로를 운행중인 화물차의 판스프링 낙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**7월말부터**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**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**를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**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**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 - \*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'차체' 또는 '물품적재장치'를 승인없이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(법 제81조)에 처할 수 있음.
  - 불법 부착한 판스프링\*이 도로상에 낙하될 경우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단속과 함께 시·군·구청장(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)의 튜닝승인을 통해 안전성확보를 유도해 왔으나, 일부 화물차에서 여전히 불법적으로 판스프링을 적재함 지지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.



\*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장치로 완충장치의 일종이나,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임의사용(불법)

- □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**경찰**, **지자체 등이** 집중 단속하도록 하고, 한국교통안전공단 **자동차안전단속원**을 활용해 단속을 지워하도록 하였다
  - 자동차검사소에서도 매 6개월마다 실시하는 자동차검사 시 적재함 지지대 (판스프링) 불법설치와 완충장치 손상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고,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계획 이다.
  - 아울러, 해당 불법행위를 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.



